

사 학 과 학 생 회 칙
전 부 개 정 안

대 표 제 출 자	김경빈 (46대 학생회장)
제 출 자	김윤정 · 박상진 · 이동하 · 최현태
제출 연월일	2023. 12 . 31.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풍부한 역사 지식과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는 세계시민이자 역사학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으로서, 인천 경기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선도하는 인하대학교 사학과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본 대학교 사학과에 적을 둔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의 자유와 권리는 학생회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③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학과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 ④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학과와 재산과 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학과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때, 정규등록 또는 부분등록을 한 인재학생만이 선거권을 가진다.
- ⑥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⑦ 본회의 회원은 학교 당국 및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학생 대표와 함께 그에 대응할 권리를 가진다.
- ⑧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학생총투표)

- ① 학생회장은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회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학생총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학생총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총투표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제6조 (내규의 제정과 개정·폐지 요구)

- ① 학생은 내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자치기구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세칙이나 자치회칙을 위반하거나 세칙이나 자치회칙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학생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본회의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학생소환)

- ① 본회의 회원은 사학과 학생자치기구 임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소환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8조 (학생에 대한 정보공개) 학생자치기구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 조직과 재무 등 학생자치에 관한 정보를 본회의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사학과 학생회

제9조 (학생회의 설치와 조직 등) 사학과 학생회 부서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특별학생자치기구의 설치) 학생회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과대학 대의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 예하에 특별학생자치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조(부장의 직무권한)

- ① 학생회 각부의 부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임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각부에서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둘 수 있다.
- ③ 차장은 각 부의 부장을 보좌하며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임원을 지휘감독하며, 부서의 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정원 등) 학생회에 배치할 임원의 종류와 정원, 임원의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학생회 사무처리의 원칙)

- ① 학생회는 사무를 처리할 때 학생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회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학생회는 학생회칙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4조(학생회의 사무범위)

- ① 학생회는 사학과와 사무와 학생회칙에 따라 본회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단, 정기답사의 경우에는 답사준비위원회가 관할한다.

제15조(학생회장)

- ① 학생회장은 인하대학교 사학과를 대표하고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학생회장은 본회의 수반으로서 학생회칙에 따라 본회의 임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학생회장은 본회 소속 임원의 처분 또는 집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④ 학생회장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회 임원을 임면한다.

제16조(부학생회장)

- ①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학생회장의 명을 받아 학생회 부서를 통할한다.
- ② 학생회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1) 궐위된 경우
 - 2) 의료기관에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 ③ 학생회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학생자치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학생회장이 그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7조(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선거)

- 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학생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8조(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겸직)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9조(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

- ① 제17조에 따른 본 선거에서 선출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본 선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제17조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사임)

- 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문과대학 상임의원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② 학생회장단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상임의원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상임의원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한다.
- ③ 사임통지서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학생회장단의 서명

2) 사임 단위 및 직책

3) 사임일

4) 사임 사유

5) 차기 직무대행자의 서명

제21조(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퇴직)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 경우 자퇴, 다른 단과대학으로 전과했을 때를 포함한다.

제22조(학생회 구성)

① 학생회 임원은 문과대학 대의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 업무에 관하여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학생회 업무를 심의한다.

③ 학생회장은 학년별 과대표를 임명 또는 선출할 수 있다. 단, 학년별 과대표는 학과의 집행기구의 구성이어야 한다.

④ 부학생회장은 학생회 임원과 학년별 과대표의 해임을 학생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학생회칙) 학생회 부서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해당연도 학생회가 정한다.

제24조(학생회 부서)

① 학생회장의 통할 하에 학생회 각부를 둔다.

② 학생회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되, 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부장은 소관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25조(학년별 과대표 선출)

① 학년별 과대표는 학년별로 1명씩 선출한다.

② 학년별 과대표는 학기가 시작한 이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년별 과대표는 단일 후보일 경우 호선, 두 명 이상일 경우 투표를 진행하여 선정한다.

④ 학년별 과대표가 궐위될 경우 같은 절차를 거쳐 남은 기간 동안 맡을 학우를 선출한다.

제26조(학년별 과대표의 의무)

① 학년별 과대표는 각자 맡은 학년을 대표한다.

② 학년별 과대표의 임기는 한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27조(학년별 과대표의 사임)

① 과대표는 그 직을 사임하려면 학생회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해야한다.

② 사임통지서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학생회장단의 서명
- 2) 사임일
- 3) 사임 사유

제3장 학회

제28조 (학회)

- ① 학회는 사학과 소속으로 현세대와 이전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로의 상호 교류, 역사 연구 분위기의 선도와 지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 ② 학회는 본회의 학술·비학술적인 자기주도적인 학생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9조 (학회의 구성)

- ① 학회장은 학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출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이 학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그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는 학회 및 소모임의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학생회와의 관계)

- ① 학생회와 학회는 상호 독립적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한다.
- ② 학생회와 학회는 서로의 운영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 ③ 해당 요구가 있을 시 학생회나 학회는 14일 안에 응답해야한다.

제4장 학생총회

제31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회의이다.

제32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가 그 구성원이 된다.

제33조 (권한)

- ① 회칙 개정 발의권
- ② 학생총투표 발의권
- ③ 사학과 정·부회장 탄핵권
- ④ 해당 학기 학생회 사업의 계획 혹은 결과에 대한 확인
- ⑤ 기타 전체회원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의 의결

제34조 (의장)

-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의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부학생회장의 궐위 시 학생회 집행부 부서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35조 (소집)

- ① 의장은 회원의 1/4 이상이 서명으로 요구할 시, 또는 학생회 집행부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일주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긴급한 상황과 안전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직권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학생총회의 소집은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후 24시간 내에 공고하여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36조 (의결)

- ①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학생총회의 사안이 제34조 제4항의 내용뿐일 경우, 출석 인원 상관없이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34조의 1, 3항은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34조의 2, 5항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결과의 공개) 학생총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사학과 학생회에서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기간은 결의안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한다.

제5장 학생총투표

제38조 (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에 준하는 의결투표이다.

제39조 (투표권)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40조 (권한)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41조 (관리) 투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인하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2조 (시행)

- ① 학생총투표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발의될 수 있으며, 그 의결은 제14조 제3항에 따른다.
- ② 학생총투표는 발의 후 회원의 1/4 이상이 서명으로 요구하는 경우 시행하며, 발의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공고하여 30일 이내에 시행한다.

제43조 (정족수)

- ①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1/3 이상의 유효투표로 성사된다.
- ② 학생총투표의 의결은 투표 인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 (결과의 공개) 학생총투표의 결과는 투표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사학과 학생회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45조 (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하며 본회의 회원을 위하여 쓰인다.
- ② 본회의 재정은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로 한다.

제47조 (예산의 편성 및 심의) 학생회장단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편성한 예산은 학생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문과대학 대의원에서 의결한다.

제48조 (예산집행)

- ① 본회의 예산은 학생회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의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부학생회장의 궐위 시 학생회 집행부 부서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 ② 학생회는 각 행사 마다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경비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9조 (결산)

- ① 집행한 경비에 대한 결산은 학기마다 실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단, 본회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결산을 실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 (감사)

- ① 본회의 예산 집행은 문과대학 대의원회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

제7장 학생회비

제51조 (정의)

- ① 학생회비는 사학과 1년 예산이다.
- ② 납부자는 제3조에 따른다.
- ③ 수납자는 '사학과 학생회'이다.

제52조 (금액) 학생회비는 1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비변경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 (납부)

① 납부자는 1학년 1학기에 10만원을 1회로 완납해야 한다.

② 납부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 (추가납부)

① 1학년 1학기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자 역시 희망자에 한해 학생회비 추가납부가 가능하다.

② 추가 납부의 금액은 남은 학기 당 12,500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 (집행) 학생회비는 해당 연도 학생회에서 집행한다. 납부자는 집행된 학생회비 내역의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 (환불) 학생회비 환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단, 학생의 단순변심 및 휴학에 의한 환불은 실시하지 않는다.

1. 다른 학과로 전과했을 때
2. 다른 학교로 편입했을 때
3. 자퇴했을 때
4. 기타 이유에서 타당함이 인정될 때

제57조 (환불방법)

① 학생회비 환불은 학생회비 환불요청서를 작성한 후에 실시한다.

② 학생회는 환불을 위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학우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장 학과 시설

제58조 (학과 시설)

① 사학과의 학과 시설은 사학과 학생회실과 자료실이다.

② 학과 시설은 사학과 학우들을 위한 곳이며, 사학과 학우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제60조 (학생회실)

① 사학과 학생회의 자치공간은 5호관 남쪽 지하 064호이며, 학생회실이라 칭한다.

② 사학과 학생회실의 보유 물품은 사학과 학우들을 위한 것이다.

③ 사학과 학생회실은 사학과 학생회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2조 (자료실)

① 사학과 자료실은 5호관 2층 217호이다.

②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은 사학과 과사무실을 통해 대여할 수 있다.

③ 해당 공간은 사학과 과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자료실은 학과 과사무실 운영시간에 맞추어 운영되며, 이외의 시간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단, 과사무실의 허락을 받은 경우 운영시간 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 9장 회칙 개정

제63조 (상정) 본 회칙의 개정 발의는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 할 수 있다.

- 1) 학생회장이 발의한 경우
- 2) 본 회칙 33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
- 3) 학생회 집행부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4) 학회 회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63조 (개정)

- ① 학생회칙은 학생회장 및 학생회장 직무대행의 주관 하에 개정한다.
- ② 학생회장은 회칙개정을 위해 회칙개정특별위원회를 7일 이내에 구성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64조(회칙개정특별위원회)

- ① 회칙개정특별위원회는 학생회 예하에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64조 (공포)

- ① 학생회장은 회칙개정안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회칙 및 민주적인 관례와 학생회 사업의 통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문과대학 대의원회에서 담당한다.

제3조 본회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회칙은 공포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